2021년 해양환경교육기관 협력사업 시행 공고

『환경교육진흥법』 제 16조 1항 제3호 및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 해양환경교육기관 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장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1 사업개요

❑ 목 적

❍ 역량 있는 사회해양환경교육기관(민간단체 등)의 교육 사업을 발굴·선정·지원하여 대국민 해양환경보전의식 증진 및 확산

❍ 사회해양환경교육기관(민간단체 등) 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사회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1. 11. 15.

❑ 사업방식(선정방식): 공모(공개경쟁)

❑ 사업예산 및 선정규모: 총 310,000천원

❍ 해양보호구역 또는 갯벌, 해양쓰레기, 특별관리해역 분야 및 그 외 해양환경과 관련된 교육사업

사업명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선정규모 및 지원금액	10개 단체 이상 (단체당 5백만원 ~ 50백만원까지 지원)
총사업비	310백만원(자부담 별도)

※ 선정규모 및 지원금액는 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을 갖춘 단체들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30백만원 이상 신청시 신청금액의 5%, 40백만원 이상 신청시 신청금액의 10%를 추가적인 자부담 사업비로 확보해야함(최고 50백만원까지 신청가능)**

❑ 지원대상(사업수행자)

❍ 정관상 해양환경교육(교구재 개발, 문화·생태교육, 학술연구 등), 환경교육 등의 활동이 목적으로 명시된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 또는, 최근 3년 이내 해양환경교육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컨소시엄의 경우 신청자격을 갖춘 단체로 구성

《공모참가 부적격대상》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 신청 기관(단체)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동아리 지원 등)
- 회원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단체 내부 행사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주요내용: 해양환경 현장체험교육 관련 교육운영 또는 교재·교구 개발 지원*

※ 코로나19 상황 대비 비대면 교육 개발 및 운영 포함하여야 함

분 야	선정사업 내용
해양환경	◦ 연안습지의 생물다양성, 생태계 변화, 인간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보호방법, 연안습지 복원정책 및 효과 등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또는 교재, 교구 개발·활용 ◦ 해양쓰레기의 종류·기원·추적, 환경피해 유형, 해양쓰레기 줄이기(수거·처리) 방법 등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또는 교재, 교구 개발·활용 ◦ 특별관리해역 지정·관리와 개선효과,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이해, 시행절차와 방법, 해당지역의 현장 탐방 등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또는 교재, 교구 개발 ◦ 해양생물, 해양과 기후변화 등 기타 해양환경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또는 교재, 교구 개발·활용 ◦ 교재 및 교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사업 외에도 해양환경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교육 컨텐츠 지원 가능 단, 개발 컨텐츠를 활용한 시범교육을 포함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 제출

2021년 해양환경교육기관 협력사업 수행 및 집행정산 매뉴얼'에 의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코로나19 상황 대비 비대면교육 운영 계획 포함),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교육안전·방역관리계획 포함)는 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사업의 공익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사회문제해결 기여도 및 경제성, 파급효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등 포함)등을 작성하여 제출

<사업 지원시 유의사항 안내>

* 지원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 발생 시,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단체에게 있음.
* 서류 접수 이후 지원 형식에 어긋나거나 증빙서류 누락 및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위원회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센터는 향후 본 사업 및 사업 결과물(개발교재 등)을 복제, 배포할 수 있으며, 센터 홈페이지 등 해양환경 관련 홍보채널 등에 게시할 수 있으며 센터와 단체 공동저작권을 가짐.
* 사업 선정후 센터는 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협력단체에게 문제(안전사고, 시설물 파손등)발생 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공고 내용은 주최(주관)측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지원서를 제출한 자는 공고문 및 매뉴얼 등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제출서류 원본과 복사본 7부를 추가로 함께 제출**)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코로나19 상황 대비 비대면 교육 개발 및 운영 포함 필수)

③ 조직소개서(조직 구성원 명기)

④ 단체 정관 사본

⑤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을 기록한 서류(감독관청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⑥ 교육현장 안전·방역 관리 계획서(단체자체 양식사용 가능)

⑦ 비영리법인 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⑧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⑨ 법인 혹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⑩ 사용인감계(실제 사용인감과 다를 경우)

⑪ 컨소시엄 표준 협약서(컨소시엄인 경우)

❍ 제출기간: 공고일 ~ 2021. 2. 19. (금) 18:00 까지

❍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 평일 근무시간 이내 (09:00 ~ 18:00)

* (우편접수) 마지막 접수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e-mail 및 택배를 통한 제출은 불가

❍ 제 출 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3 해양환경교육원 3층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051-400-7720)

3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해양환경 현장을 활용한 해양환경교육기관(민간단체 등)의 고유사업을 대상으로, 대국민 해양환경 인식증진 및 교육효과 제고 가능성 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인력 및 조직	(1) 회계·예산 담당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으며 실무책임자가 사업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다	30
	(2) 강사는 해양환경교육을 위한 충분한 경력과 전문성을 지닌다	
	(3) 해양환경 관련 사업 및 기타 공익사업 활동 실적이 충분하다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1) 프로그램이 교육생의 관심을 유발하며 해양환경 보전인식을 고취시킨다	40
	(2) 참가자들이 바다를 직접 체험하고 현장체험 장소의 지리적, 생태적, 환경적, 문화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3)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 가능한 교육 사업이다	
	(4) 코로나19 상황 대응 비대면교육 계획 수립이 적절하다	
예산편성 적정성	(1) 예산 기본원칙 및 기준표을 이해하고 편성하였다	30
	(2) 예산은 프로그램의 내용에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	
	(3) 사업 목표(성과)에 따라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계획했다	
합 계		**100**

※ 모든 단체는 자부담 책정할 수 있으며 자부담 확보 사업 우선지원

※ 장애인 및 소외계층, 어업종사자 대상 사업 가점(최대 3점)

※ 환경부, 유네스코 등의 우수 교육 인증을 받은 사업 가점(인증서 제출시 최대 2점)

※ '20년도 참여 단체의 평가 결과는 가감점으로 반영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산출한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선정절차

협력사업 공모	⇒	사업계획서 접수	⇒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	사업수행자 선정

❍ 심사 및 순위결정

- 서면 및 대면심사: 공모 참가자격 적격 심사*

* 내외부 사정에 의해 적기에 위원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평가 일정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위원회 구성(관련 전문가 6명 이내)

· 4개 평가항목(수행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기대효과, 예산편성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

· 자부담율 및 평가 고득점순으로 예산을 적정 배분하여 사업 및 지원규모 최종 확정

❍ 결과발표(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발표)

- KOEM 홈페이지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 된 단체는 통보받은 즉시,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요청하는 기한 내 지원 확정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사업선정 후 제안 당시의 자부담 비율 하향조절 불가하며, 자부담 사업비도 예산사용 매뉴얼에 준하여 집행·정산하여야 함

※ 자부담사업비는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미집행시 동일한 비율로 보조금 반납

- 단체가 제출한 사업실행계획 검토 후 기준에 적정한 경우 사업 승인

※ 기준 미달인 경우 보완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 후에도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업 선정 취소(3일 이내 보완서류 제출)

- 사업 승인을 받은 단체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및 협약 체결

4 사업비 교부 및 의무사항

❍ 사업비 교부(분할 지급 원칙)

- 1차: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자부담 책정 사업은 자부담금 사업비 통장 선입금) 확인 후, 총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중간보고서 제출(회계지침 준수 여부 및 사업실적 검토)에 따라, 잔여 사업비인 30% 지급

❍ 종합평가

- 사업결과보고서, 교육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사업결과물 접수
- 2개 부문(사업, 회계) 4개 분야(사업수행자 역량, 운영과정, 사업성과, 회계) 종합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A·B·C·D·E(100점 만점 기준)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차기년도 사업에 가감점 부여
- 회계기준에 따른 부당 집행금액이 1백만원 이상 단체는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사업 참여서 의무사항**

- 분기별 교육 실적 보고(1~3분기 보고, 4분기는 최종결과보고로 대체)
- 교육프로그램 온라인 신청 접수 등록(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계획 및 실시(최소 1회 이상)
- 교육 안전·방역 계획 수립 및 운영(일단위 방역이행 결과보고 포함)
-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및 협약식 참석(사업 실무 담당자 참석 필)
- 사업 현장점검(사업 기간 내 상시) 실시
- 중간·최종 정산보고서 작성 및 회계사무소를 통한 회계검사(회계 검사비 예산 필수 책정)
- 중간·최종 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회(워크샵) 및 최종평가회(해양환경교육 경진대회) 참가(사업 실무 담당자 참석 필)
- 개발 교재 공동저작권 소유 및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업로드
- 10월 31일까지 교육 및 사업 일정을 완료하고, 11월 15일까지 사업결과보고서, 교육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기타 결과물 등 모든 서류 제출

7 기 타

❍ 사업신청 자격은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신청 자격을 득한 경우에 한함

❍ 지원 서류 제출 이후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결정된 경우, 공단으로 통보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및 교부금의 부당사용 및 계획상용도 외 사용 시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며 향후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회계기준에 따른 부당 집행금액이 1백만원 이상 단체는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051-400-7720)로 연락